

호네커 소송의 법정사진촬영에 대한 가처분명령의 신청은 그가 절대적 중요인물이고,
일반공중의 정보충족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연방헌법재판소 1992. 11. 11. 결정-

1 BvR 1595/ 92 : 1 BvR 1606/ 92 사건-

적용법조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문, 독일법원조직법 제 176 조

판결요지

1.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문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의 자유와 관련시켜보면,
TV 기자들이 법정에 출입하고 또한 법정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Erich Honecker 및 기타의 사람들에 대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변론의 전 또는 후에 걸쳐서
적절한 범위내에 있어서 법정에서의 사진의 촬영을 허가하는 가처분명령의 발부에 관하여.

사실개요

Erich Honecker 와 기타 관계인들에 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TV 사진촬영에 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명령의 발부신청에 관한 법정경찰적인 조치.

Erich Honecker, Erich Mielke, Willi Stoph, Heinz Keßler, Fritz Streletz 및 Hans Albrecht 에
대한 베를린 지방법원 제 27 형사부의 형사절차의 개시 기일이 1992. 11. 12. 목요일
09:30 으로 지정되었다. ARD 방송국, ZDF 방송국, RTL 방송국 및 Sat 1 방송국을 포함한
헌법소원제출자들은 위 재판절차에 관한 보도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위 재판절차의
취재를 위하여 몰려들 사건기자들 및 신문기자들의 수가 많을 것을 고려하여

제 1 헌법소원제출자인 ZDF 방송국은 위 재판부의 재판장에게 1992. 8. 31.자 서면을 통하여 위 법정에서의 사진촬영을 위하여 소위 Pool 제를 건의하였다. 위 Pool 제에 의하면, 3 사람으로 구성된 오로지 1 개조의 사진기자팀이 위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위 입장이 허용된 방송국은 위 촬영된 사진자료를 무상으로, 모든 관계된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제 1 헌법소원 제기인은 Erich Honecker 와 기타 관계인들에 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위 Pool 제에 관하여 제 2 헌법소원 제기인들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의하면, 최초의 재판기일에는 ZDF 가 취재하고, 그 후에는 교대로 ARD, RTL 및 Sat I 이 취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법원의 언론담당자는 1992. 11. 3 에 위 제 27 형사재판부 재판장의 결정을 통고하였는 바, 위 결정에 의하면, 법정내에서의 TV 사진촬영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정외의 안전지역에서의 촬영만이 허용된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제 1 소원제기인은 1992. 11. 8.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베를린 지방법원 제 27 형사부의 재판장에게 가처분의 방법으로, 소위 Pool 제의 방법으로 하나의 TV 사진 촬영팀에게, 1992. 11. 12.부터 Erich Honecker 및 기타 관계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론절차가 열리는 베를린 지방법원의 법정에서, 변론의 시작전과 변론의 종결후 및 변론의 진행중 휴정시간에는 위 법정내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조치를 명 해줄 것을 신청 하였다.

그 후 위 재판부의 재판장을 1992. 11. 9.자 결정에 의하여 그의 종전의 법정경찰명령을 변경하면서, 최초의 변론기일에, 그리고 변론이 시작되기 이전에만, 그리고 약 5 분동안, 1 명의 사진기자와 2 명의 보조자로 구성된 1 개의 카메라팀이 법정내에서 마이크 장치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허 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 2 소원제기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1992. 11. 9. 베를린 지방법원 제 27 형사부의 재판장의 위 법정경찰명령에 대하여 헌병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명령의 발부를 청구하였다.

모든 헌법소원제기인들은, 위 법정경찰명령에 의하여 그들의 카메라팀이 법정에서의 촬영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문에 근거한 방송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별도의 자유와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의 권리는 방송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는,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신청된 잠정적인 조치를 허가해 주는 것이 긴급하게 요청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가처분명령이 발부되지 아니하게 되면 Erich Honecker 를 비롯한 구 동독의 고위급 대표자들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한 여론의 형성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일반대중은 위 피고인들의 상해와 행동에 대한 어떠한 인상도 스스로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법정 밖에서의 안전구역에는 발을 들여놓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밖 안전구역에서의 사진촬영의 허용은 위와같은 일반 공중의 정보청구권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결이유

(전략)

B.

위 가처분명령의 신청은 정당하다. 위 가처분명령을 발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발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논거를 상호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위 명령을 발해야 하는 논거가 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 연방헌법재판소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다툼있는 사건을 잠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 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중대한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는 공권력 행위의 위헌성에 대하여 제기된 논거들은, 원칙적으로 이를 고려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다만, 헌법소원이 원래부터 부적법하거나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와같이 헌법소원 절차의 결과가 논외로 되어있는 상황하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신청된 가처분명령이 발부되었으나 후에 그 헌법소원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불이익과, 반대로 가처분명령이 발부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결과를 서로 비교형량하여, 가처분명령을 발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BVerfGE 85,94 <95f.> ; st. Rspr. 참조).

2. 위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도 아니고 또한 명백히 이유없는 것도 아니다.

법원조직법 제 176 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재판장의 명령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행사가 문제로 되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BVerfGE 50, 234 <238f.> 참조).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법정경찰원에 기한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수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BGHst 17,201 <202> ; KKStPO/Mayr, § 176 GVG, Rd.-Nr. 7 참조). 이와같은 견해가 독일기본법 제 19 조 제 4 항의 법적 보호보장규정과 관련하여 그대로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판례 및 학설의 일관된 견해와 관련하여 결정의 급박성으로 인하여 소원제기인이 가처분명령의 절차에 대하여 이의절차를 밟도록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재판장의 1992. 11. 9.자 변경처분에 의하여 소원제기인들의 재차의 신청에 대하여는 어떠한 해결책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위 헌법소원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점, 즉 방송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법정에서의 TV 사진촬영이라는 영역에서도 보호될 수 있는지 및 어느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는지의 문제점은 아직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언론사의 기자들이 형사절차에 참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의 보호범위에는 정보원예의 자유로운 접근이 포함되어져 있음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하고 있는 바이다(BVerfGE 50,234 <240f> 참조). 방송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독일기본권 제 5 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과 마찬가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 방송의 자유가 TV 기자들에 대하여도 취재와 촬영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아래에서 독일 법원조직법 제 169 조 이하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방송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헌법소원제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 만약 이 사건 신청된 가처분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만약 본안절차에 있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어진다면, 위 형사사건소송에 관한 TV 사진 보도는 극히 불충분하게 행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위 형사사건을 개정하면서 위 피고인들 이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은 헌법소원제기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명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면의 촬영에 위와같은 여러가지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면, 위 장면의 충실한 녹화기록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위 형사사건의 나머지 절차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기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다.

b) 반면에, 위 가처분명령이 받아들여졌으나, 후에 위 헌법소원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결국 헌법소원제기인이나 또는 일반공중이 청구권도

가지지 아니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공표해 버린 결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로 됨으로 인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소원제기인들이 제안하는 바와 같은, 3 사람으로 구성된 오로지 1 개조의 카메라팀만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고 하는 소위 Pool 제 및 쌍방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하기 위한 촬영시간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법정에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든가 또는 이로 인하여 원활한 변론의 진행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든가 하는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위와같이 촬영 및 공표가 허용되게 되면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인격권 특히 피고인들의 초상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진촬영 자체는 사후에 이를 멸실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진을 이미 공표해 버린 경우에는 이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크게 중요시해야 할 점은, 피고인들은 이미 저작예술법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말하는 「그 시대에 있어서의 절대적 중요인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위 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의 사진은 공표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수많은 사진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으로써 피고인들이 가진 「예의상의 존중청구권」이 침해 당할 수 있다는 염려는, 위 Pool 제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미 형사기소로 인하여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상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TV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위 건강이 더욱 현저히 악화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로 존재하는지는 확실치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의 건강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바로 위 Pool 제가 채택되게 되면 비교적 절제된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c) 위와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가처분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헌법소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불이익이, 이 사건 가처분명령이 받아들여졌으나 후에 헌법소원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불이익보다도,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에 있어서는 변론의 시작 전 및 변론의 종결후에 법정의 내에서, 적절한 범위내에서 사진촬영을 허가하는 것만으로써 충분하다. (※ 즉 재판의 중간 휴식시간의 촬영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촬영을 함에 있어서 촬영시간을 확실히 못박아 허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촬영을 하면서 장소적, 조직적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개개의 재판기일에 있어서의 구체적 상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위 시간적 제한은 미리 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당하다.

위와 같은 일반공중의 정보충족의 필요성과 그리고 TV 방송의 기술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촬영시간을 적절히 확정하는 것은 담당재판부 재판장의 임무인 것이다.